

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023. 8. 28.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04호로 2023년 8월 11일 유승용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3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구민의 에너지절약 실천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해당 조례에 대해 책무사항 등 기타조항을 정비하고,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의 책무”에서 “구의 책무”로 변경(안 제4조)
- 나. 에너지 절약용품 지원사항 신설(안 제16조2항)
-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 8. 10.~ 8. 14.)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국민의 에너지절약 실천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해당 조례에 대해 책무사항 등 기타조항을 정비하고,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기 위하여 구민이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또는 에너지 진단에 참여한 경우 에너지 절약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4조의 책무의 주체를 구청장에서 구로 개정하여 안 제2조의 기본이념의 주체와 통일 및 장(章)과 조문제목의 정비로 조례를 체계화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1

에너지법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여야 하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